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하안전평가서등 부실 작성 시 과태료 상향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05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제2219105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지하안전평가서등 부실 작성 시 과태료 상향 (안 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2항제3호 삭제)	2

I.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제2219105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전용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6. 5.

다. 회 부 일 : 2026. 7.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안전평가등은 지하안전 확보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사업 시행 전후의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평가하는 핵심적인 안전관리 절차이며, 지하안전평가등에는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준인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할 때 낮은 측면이 있어, 유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지하안전관리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3. 검토의견

가. 지하안전평가서등 부실 작성 시 과태료 상향

(안 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2항제3호 삭제)

개정안은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지하안전평가등’과 ‘안전점검’의 불성실한 수행에 각각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5. (생략) ③ ④ (생략)	제56조(과태료)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u><삭제></u> 3. 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1) 지하안전평가등의 실시 등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지하안전평가등’¹⁾이란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²⁾를 말하며, 지하안전평가서등³⁾이란 지하안전평가등을 실시한 후 작성하는 평가서 또는 조사서⁴⁾를 말함.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②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지하안전평가등의 실시 등에 대하여는 현행법 제14조⁵⁾, 제20조⁶⁾, 제23조⁷⁾, 제35조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에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에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24조제2항제2호⁹⁾에서는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¹⁰⁾에 대하여, 제27조제2호¹¹⁾에서는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각각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②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1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지하안전평가등의 실시 및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과 관련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지하안전평가등의 실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51조 및 제52조¹²⁾에서 지하안전평가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되, 업무상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9.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2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되, 업무상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지하안전평가서등 작성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54조제1항제5호13)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56조제2항제3호14)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지하안전평가등의 실시 등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

구분	지하안전평가등의 실시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의무	○제1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u>지하안전평가 실시</u> ○제20조: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	○제24조: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1. (생략)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구분	지하안전평가등의 실시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
	는 지하개발사업자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u>착공후지하안전조사</u> 실시 ○제2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u>소규모 지하안전평가</u> 실시 ○제35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 침하위험도평가 실시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안전점검 실시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가 되는 자료를 <u>거짓</u>으로 또는 <u>부실</u>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 5. (생략)
벌칙	○제51조 및 제52조 ① 지하안전평가등 <u>미실시</u> 또는 <u>불성실한 실시</u>로 <u>지반침하</u>를 일으켜 <u>공중의 위험</u> 발생 → <u>10년 이하</u>의 징역 → <u>업무상 과실</u>인 경우: <u>5년 이하</u>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u>5천만원 이하</u>의 벌금 ② ①의 죄를 범하여 <u>사상(死傷)</u> 발생 → <u>무기</u> 또는 <u>3년 이상</u>의 징역 → <u>업무상 과실</u>인 경우: <u>10년 이하</u>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u>1억원 이하</u>의 벌금	○제54조제1항제5호 – 지하안전평가서등 <u>거짓</u> 작성 → <u>2년 이하</u>의 징역 또는 <u>2천만원 이하</u> 벌금
과태료	-	○제56조제2항제3호 – 지하안전평가서등 <u>부실</u> 작성 → <u>1천만원 이하</u> 과태료

(2) 안전점검 실시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현행법 제10조제항 및 제34조제2항¹⁵⁾은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함)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안전점검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벌칙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51조 및 제52조¹⁶⁾에서 안전점검을

1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되, 업무상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동 범죄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되, 업무상 과실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과태료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56조제1항제2호17)에서 안전점검을

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9.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2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현행법 제51조제1항 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점검 실시 등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

구분	지하안전평가등의 실시
의무	○제34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u>안전점검</u> 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정기적으로 실시</u> 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벌칙	○제51조 및 제52조 ① 지하안전평가등 <u>미실시</u> 또는 <u>불성실한 실시</u> 로 <u>지반침하</u> 를 일으켜 <u>공중의 위험</u> 발생 → <u>10년 이하</u> 의 징역 → <u>업무상 과실</u> 인 경우: <u>5년 이하</u>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u>5천만원 이하</u> 의 벌금 ② ①의 죄를 범하여 <u>사상(死傷)</u> 발생 → <u>무기</u> 또는 <u>3년 이상</u> 의 징역 → <u>업무상 과실</u> 인 경우: <u>10년 이하</u>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u>1억원 이하</u> 의 벌금
과태료	○제56조제2항제3호 - 안전점검 <u>미실시</u> 또는 <u>불성실</u> 수행 → <u>2천만원 이하</u> 과태료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

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지하안전평가등’ 및 ‘안전점검’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비교

‘지하안전평가등’ 및 ‘안전점검’ 관련 벌칙 및 과태료를 비교하면,

벌칙은 지하안전평가등과 안전점검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형량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과태료는 불성실한 수행에 해당하는 ‘지하안전평가서등 부실 작성’과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한 부과 금액이 각각 ‘1천만원 이하’와 ‘2천만원 이하’로 차이가 있음.

【 ‘지하안전평가등’ 및 ‘안전점검’ 관련 벌칙 및 과태료 비교 】

구분			지하안전평가등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벌칙	미 실시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지반침하 발생	사상자 X	- <u>10년 이하</u>의 징역 - <u>업무상 과실</u>인 경우: <u>5년 이하</u>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u>5천만원 이하</u>의 벌금	
		사상자 O	- <u>무기</u> 또는 <u>3년 이상</u>의 징역 - <u>업무상 과실</u>인 경우: <u>10년 이하</u>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u>1억원 이하</u>의 벌금	
과태료	미 실시 또는 불성실		○지하안전평가서등 <u>부실</u> 작성 - <u>1천만원 이하</u> 과태료	○안전점검 미 실시 또는 <u>불성실</u> 수행 - <u>2천만원 이하</u> 과태료

개정안은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등’ 및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에 각각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유사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여 지하안전평가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¹⁸⁾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불성실한 안전점검 및 지하안전평가등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동일하므로, 유사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실하게 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 또한 개정안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문 의 처

02)6788-5591

18) 참고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